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7 선고 2021나1949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박성규

피고, 피항소인 진주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산해

변 론 종 결 2021. 12. 3.

판 결 선 고 2022. 1. 7.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9. 선고 2020가단524809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7,8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값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경남개발공사는 2015년 무렵 진주시 B동 일원(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구역’이라고 한다)에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고, 그 구역 내 상수도시설을 피고에게 기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9. 9.경 이 사건 택지개발구역 안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면서 피고에게 위 공동주택에 필요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9. 10. 「진주시 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고 한다)」에 의하여 위 급수공사를 승인하면서 원고에게 아래 급수공사비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9. 10. 31. 이를 납부하였다.

구분	합계	시공비	관급자재대	시설분담금	수수료
급수공사비	137,835,000	14,406,900	12,880,000	110,256,000	292,100

다. 위 ‘시설분담금 110,256,000원(이하 ‘이 사건 시설분담금’이라고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급수조례 제14조에 따른 것으로, 그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법 제138조(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급수조례 제14조(시설분담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에 따른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전용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3. 급수관의 구경확대

②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또는 단일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1) 이 사건 시설분담금은 수도법 제71조의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고, 택지개발사업의 원인자는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이므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의무는 경남개발공사에 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 2) 이 사건 택지개발구역 내 상수도시설은 경남개발공사가 이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여 설치하였으므로, 그 비용을 재차 공동주택의 건설사인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담금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다.
- 3) 이 사건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급수공사비도 실제 공사에 필요한 개별 산정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부과되어 위법하다.
-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급수공사비 137,835,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시설분담금의 성격

이 사건 시설분담금의 근거 법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급수조례 제14조이다. 한편, 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도법 제3조는 ‘수도’를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제5호), ‘수도시설’을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제17호), ‘수도공사’를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제25호)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증설·개조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수도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장래에 소요될 수도시설 공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급수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은 이미 상수도시설 설치가 완료된 지역에 신규 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기존 상수도시설의 조성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 및 부과·납부시점 등을 달리하는바, 이 사건 시설분담금의 성격과 근거 법령을 살펴보면 이는 원인자부담금이 아니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피고의 상수도시설을 사용하려는 원고에게 그 조성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중부과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증설·개조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수도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장래에 소요될 수도시설 공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고, 시설분담금은 이미 상수도시설 설치가 완료된 지역에 신규 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공사비를 납부하면서 함께 기존 상수도시설의 조성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부과·납부시점을 달리 하나, 그 부과 상대방이 수돗물 사용량을 증가시켜 기존 상수도시설의 용량에 부담을 유발하는 자이고, 재원조달목적이 상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요소가 있다. 따라서 어떤 사업자가 특정 사업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자로서의 지위 및 주택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겸하면서 수도시설에 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는 실질적으로「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경남개발공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여 상수도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피고에게 기부하였고, 피고가 피고 소유의 상수도시설을 사용하려는 원고에게 그 조성비용 부담을 목적으로 이 사건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것이 위 법률이 금지하는 부담금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부담금 이중부과는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57431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359 판결 등의 사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이 모두 부과된 사안으로 이 사건과 내용이 다르다).

3) 그 외 급수공사비의 위법 여부

이 사건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석준협, 판사 권양희, 판사 주채광